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

내 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지침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년도부터 최대 연속 3년까지 연간 정액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 및 김해시에서는 성인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면서 최대 연속 3년의 지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연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지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타 국가지원금(긴급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의 의료지원금을 공제하지 않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상한금액을 초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에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1,0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은

○○○에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1,0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수는

○○○에게 중복으로 지원한 1,2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